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339 발의연월일: 2024. 8. 29.

발 의 자: 김소희·권영세·신동욱

김위상 · 김예지 · 백종헌

우재준 • 이종배 • 김성원

강승규 · 김선교 · 이달희

조지연 · 이종욱 · 박수민

서범수 · 강대식 · 이인선

의원(18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생에너지 설비의 이격거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음.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이격거리 규제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마다 다른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저해하는 갈등 유발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과도한 규제 도입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설치할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격거리 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는 이격 거리 설정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하 고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 설). 법률 제 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3(이격거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3(이격거리)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
	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다.